

#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 《 관련 규정 》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11.  
제 출 자 : 강북구청장

### 1. 제안이유

특별한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발을 못하는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있는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근 거: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출연대상: 재단법인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 출연금액: 금350,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2016년 2월 중 현금 출연

### 3. 관련규정

-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출연 및 운용)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서울특별시 강북구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